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4년 3월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영업을 종료하는 독립 회계 지점의 손실은 본사로 이전됨
-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인증서를 부여되는 지원산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이중과세회피방지협정("DTA") 적용시 부동산 가치비율 및 소득의 실질수혜자 확정

간접세 ("VAT")

- EPC 계약의 각 업무범위의 가치가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적용 VAT세율
- VAT 감면기간동안 판매된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 적용 VAT세율

개인소득세 ("PIT")

- 직원에게 구정 선물을 제공할 때 PIT 원천징수
-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지출한 시 PIT원천징수
- 회사가 직원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주는 경우 PIT 원천징수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베트남에서 FCWT 신고 및 납부에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무역 및 관세

- 내국 수출입 거래 현황 업데이트
- 국내 수출 물품 및 국내 원자재로 생산된 물품은 수출관세가 면제되지 않음
-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한 건설화물 통관절차
- 임시수입된 면세화물이 국내소비로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세금정책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영업을 종료하는 독립 회계 지점의 손실은 본사로 이전됨

지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독립적 회계 단위로서 CIT를 별도로 신고한다
- 회사가 해산된 지점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 세무당국은 지점의 세금결산을 감사하여 각 연도의 손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연간 발생손실이 손실이월규칙 (발생연도부터 5년이내)에 따라 본가의 CIT 과세소득에 상계될 것이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2월 28일 제9579/CTHN-TTHT호 공문)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인증서를 부여되는 지원산업 제품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개발 우선된 지원산업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인증서는 지원산업조건에 따라 CIT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 투자 프로젝트는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인증서의 날짜로부터 지원 사업에 대해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투자 프로젝트는 여러 지원산업 제품을 생산하고 하나 이상의 인센티브 인증서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적격 제품은 인센티브 인증서가 발급된 과세연도부터 투자 프로젝트의 잔기간 동안 지원 산업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2월 23일 제658/TCT-CS호 공문)

이중과세회피방지협정("DTA") 적용시 부동산 가치비율 및 소득의 실질수혜자 확정

부동자산 가치비율 확정:

세무총국은 지방 세무국에 회사의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확정하기 위해 DTA의 제6.2조; 2015년 민법의 제105조, 제107조, 제108조; 제205/2013/TT-BTC호 시행규칙의 8항을 참조하도록 요청한다.

단기 부채, 건설중인 비용등과 같은 항목의 합리성을 검토, 검사 및 확정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결정한다.

현금, 단기 미수금, 미지급금, 미분배 이익잉여금 등과 같은 항목의 합리성을 검토, 검사 및 확정하여 총 자산의 가치를 올바르게 결정한다.

실질 소득 수혜자 확정:

세무총국은 외국 세무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 외국기업 (양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세무국에 회사의 실제 사업활동을 근거하여 자본양도 소득을 받는 실제 소혜자를 명확히 확정하도록 요청한다.

양도 가격 결정:

세무총국은 현지 세무국에 DTA의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양도의 목적과 특수관계자간의 양도가격 구조를 확정하도록 요청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2월 27일 제688/TCT-HTQT호 OL 및 제689/TCT-HTQT호 공문)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EPC 계약의 각 업무범위의 가치가 분리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적용 VAT세율

회사가 EPC 계약 (자재 및 설치 서비스 공급 포함)을 체결한 시 제 94/2023/NĐ-CP호 시행령 ("제94호 시행령")에 따라 VAT세율 감면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 각 업무범위의 계약금액이 분리 가능할 경우 각 항목에 대한 VAT세율 감면이 제94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 각 업무항목의 가치가 분리 불가능할 경우 가장 높은 VAT 세율이 적용된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4년 3월 7일 제 2172/CTHĐU-TTHT호 OL)

VAT 감면기간동안 판매된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 적용 VAT세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VAT 10%로 구매된 재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적절한 사양과 품질로 인해 구매자에 의해 반품될 경우:

- 판매자는 반품에 대한 조정 계산서 또는 VAT 10%로 대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는 반품 기록서를 있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3월 06일자 제 3948호/CTHĐ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 소득세 ("PIT") 지침 문서

직원에게 구정 선물을 제공할 때 PIT 원천징수

회사가 직원들에게 신년선물, 슈퍼마켓 상품권등을 제공할 때, 이러한 선물이 고용주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현금 이익으로 간주되면, 이는 제111/2013/TT-BTC (제111호 시행규칙) 규정의 제2조 2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PIT과세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경우에 회사가 제111호 시행규칙의 제25.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2월 5일 제 7443/CTHN-TTHT호 OL)

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지출한 시 PIT원천징수

- 회사가 (회사의 직원이 아닌) 개인고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선물이 재무부의 제111호 시행규칙의 제2조 10항에 규정된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아니면 해당선물로 인한 소득은 PIT과세되지 않다
- 회사가 종업원의 활동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경우 (이 돈은 종업원이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한 개인이 종업원을 대신하여 수령함) 해당 소득은 대신 수령자의 PIT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3월8일 제11223/CTHN-TTHT호 OL)

회사가 직원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주는 경우 PIT 원천징수

- 회사가 직원을 위해 생명보험을 사주는 경우, 이 생명보험이 의무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PIT를 계산목적으로 공제항목이 아니다. (제111호 시행규칙, 제9.2.a조).
- 회사가 누적 보험료로 직원을 위한 생명 보험에 사주는 경우: PIT를 신고해야 한다 (제 92 호 시행규칙)의 제14.2조).
- 생명보험으로 인한 이자소득 및 생명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상금: PIT 면제 (제111호 시행규칙의 제3.1.g조 및 제92호 시행규칙의 제12.3조).
- 회사가 직원을 위해 누적 보험료 없는 생명보험을 사 주는 경우: 수수료가 PIT 면제된다. (제92호 시행규칙의 제11.3조)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2월 23일 제8974/CTH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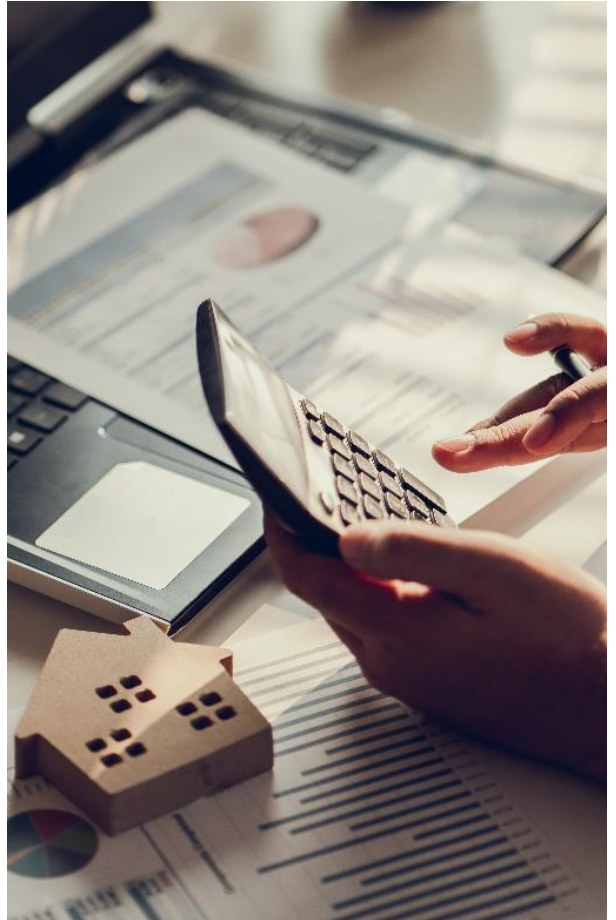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베트남에서 FCWT 신고 및 납부에 이중과세방지협정 (“DTA”) 적용

- 외국인 계약자가 해상운송 협력계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베트남 당사자는 제103/2014/TT-BTC호 제 4 조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에 결제하기 전에 VAT 및 CIT을 징수할 책임이 있다.
- 한국 계약자가 제 205/2013/TT-BTC호 시행규칙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한국 간의 DTA에 따라 CIT 면제된다. DTA에 따른 세금 면제 / 감면 신청 절차 / 서류는 제 80/2021/TT-BTC 호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행된다.

베트남 세무당국은 제 205/2013/TT-BTC호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따라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기한을 초과한 세금에 대한 DTA 적용 신청을 거절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2월 23일 제8973/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지침 문서

내국 수출입 거래 현황 업데이트

2024년 2월 20일에 세무총국은 외국 상인이 참여하는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한 VAT 환급을 안내하는 제558/TCT-CS호 OL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당국은 외국 상인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있으므로 내국 수출 신고서가 내국 수출규정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면 VAT 환급을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4년 2월 20일 제558/TCT-CS호 OL)

2024년 2월 29일에 재무부는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 제1항 c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제안을 회신하는 제2156/BTC-TCHQ호 OL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있는 외국 상인은 (i) 대표 사무소, 지점, 사업장; (ii) 자본투자, 주식구매, 출자자본 구매; (iii) 투자 프로젝트 수행; (iv) BCC 계약 형태의 투자, 및/또는 (v)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및 경제 조직 유형을 구현 등 있으면, 따라서,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조 1항 c호에 명시된 내국 수출입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외국 상인간에 거래 되는 물품을 외국 상인이 해당 물품을 베트남 내 배송 및 수령하도록 지정한 거래활동에 베트남 국경이나 세관 통제 구역밖으로 물품의 이동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내국 수출입 활동에 대한 현행 규정은 다른 관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다.

따라서 재무부는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한 적절한 수정 및 보완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정부 기관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

내국 수출입과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Deloitte Vietnam- [2024년 1월 세무관세 뉴스](#)에서 참고하십시오.

(재무부의 2024년 2월 29일 제2156/BTC-TCHQ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지침 문서

국내 수출 물품 및 국내 원자재로 생산된 물품은 수출관세가 면제되지 않음

관세총국의 지침에 따르면

- **내국 수출품은 수출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내국 수출자는 세관 신고 시 내국 수출품의 수출 관세율과 관세가치를 기준으로 수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 **국내 원자재로 생산된 수출품은 수출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기업은 현행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2월 19일 제 651/TCHQ-TXNK호 OL)

임시수입된 면세화물이 국내소비로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대한 세금정책

보증, 수리, 교체를 위해 임시적으로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물품은 세금면제된다. 해당 물품은 국내소비로 사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자는 새로운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당시에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 관리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3월 12일 제1008/TCHQ-TKNK호 OL)

수출가공기업(“EPE”)을 위한 건설화물 통관절차

공조 시스템, 환기 시스템, 전기 시스템, 상하수도 시스템, 소방시설 시스템등의 화물에 대해 현행 법규정상 위 화물을 소비재로 확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그러한 확정은 관세총국 및 재무부의 안내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다.

회사가 EPE를 위한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규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활동은 0% VAT 세율이 적용된다.

(관세총국의 2024년 2월 27일 제788/TCHQ-GSQL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